

의정정보

2

2017-2호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 **최근 타시·도 제·개정 조례**
 -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등 5건
-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수원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건
-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 대전시의회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등 4건
- **최근 제·개정 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 4건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 **대법원 판례**
 - 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에 관한 사건 판례 등 3건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Contents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5)
- ▶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9)
-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13)
-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5)
- ▶ 대전광역시 알권리 충족 조례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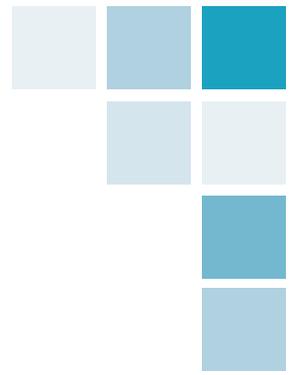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 수원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20)
- ▶ 성남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3)
- ▶ 춘천시 윤희순상 조례 (25)
- ▶ 고성군 2018 평창동계올림픽 민간추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27)
- ▶ 순창군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28)

타 시·도 의회 주요 동향

- ▶ 대전시의회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33)
- ▶ 울산시의회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처리 간담회 개최 (34)
- ▶ 경기도의회 일본의 파렴치한 역사왜곡 시도, 즉각 철회하라! (36)
- ▶ 강원도의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건의문 (37)





최근 제·개정 법령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40)
- ▶ 온천법 시행령 (42)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43)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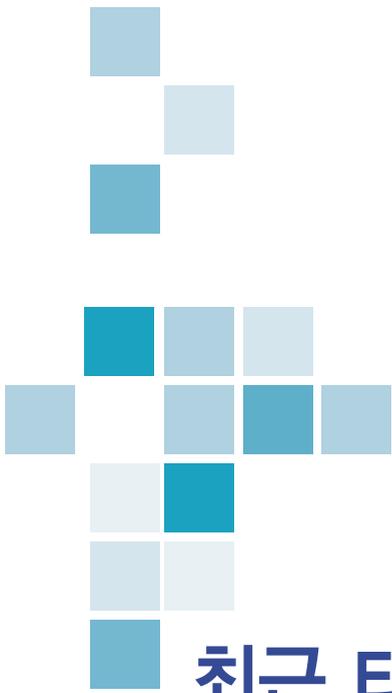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 ▶ 거제시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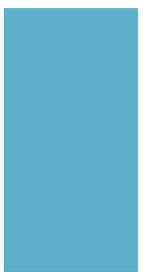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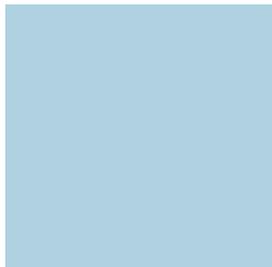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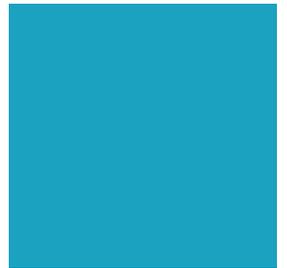
타 시·도 의회 주요 동향

- ▶ 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에 관한 사건 판례 (53)
- ▶ 부패가 진행 중인 양파와 건고추를 수입, 보관, 판매한 사건 (55)
- ▶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 사건 판례 (57)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 2016.7.14.] [서울특별시조례 제6283호, 2016.7.14., 제정]

□ 주요목적

서울특별시가 건립추진 중이거나 운영하는 박물관의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2. “박물관자료”는 법 제2조제3호의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라 함은 자료를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 양도함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 자료로 수입하는 것을 “수증”이라 한다.
5. “기탁”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 일정기간 동안 위임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이 위임받아 보관하는 것을 “수탁”이라 한다.
6. “출납”이라 함은 자료의 반입 및 반출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말한다.
7. “수장고”라 함은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8. “대여”라 함은 자료를 다른 기관 등으로 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9. “열람”이라 함은 자료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10. “복제”라 함은 자료를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제2장 자료 수집

제3조(자료 구입)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고를 하거나 추천 또는 경매를 통하여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단체로부터 박물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구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료수집실무위원회의 예비평가와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개별 박물관별로 설치되어 있는 운영자문위원회(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자체 위원회 포함)의 최종심의를 거쳐 평가범위 내에서 구입대상 자료와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③ 시장이 경매자료, 국가 또는 시·도 지정문화재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공개구입 또는 현지구입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를 받아 구입할 수 있다.

제4조(자료 기증) ① 시장은 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유상기증은 제3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단, 무상기증은 자료수집실무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③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자료의 기탁 등) ① 시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 대여, 위탁 보관, 관리전환 등을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단체로부터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수탁 등의 결정은 필요시 개별 박물관별로 설치되어 있는 운영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료 수탁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수탁 시에는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장 자료수집실무위원회와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

제6조(자료수집실무위원회) ① 구입 평가대상 자료 등의 선정을 위하여 개별 박물관 별로 자료수집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개별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위원은 관장과 박물관의 자료관리관을 당연직으로 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되 문화재분야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집대상 자료의 조사 및 범위선정
2. 평가대상 자료의 선정
3. 기타 자료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매회 당해 실무위원회의 종료 시까지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 ① 구입 또는 기증대상 자료의 평가를 위하여 개별 박물관별로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 대상 분야별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원합의로 한다.

③ 평가위원은 서울시문화재위원 및 문화재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당해 분야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집대상 자료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
2. 수집대상 자료의 역사 문화적 해석 및 고증
3. 기타 자료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평가위원회는 참석위원이 서명한 자료평가서를 작성하여 수집자료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구입대상 자료 최종심의)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평가한 구입대상 자료는 개별 박물관별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제9조(수당 등 지급) 실무위원회와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출장비 및 심의 평가료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자료의 관리

제10조(자료관리관 등 지정) ① 시장은 박물관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료관리관과 자료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자료관리관은 자료의 관리,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자료출납공무원은 자료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제11조(자료의 관리) ① 시장은 소장자료에 대하여 망실·훼손 또는 도난 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자료는 일반 자료와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자료의 이동시에는 안전운반에 필요한 특수함 등을 사용하고 안전 운송에 필요한 특수차량 등을 이용한다.

④ 시장은 자료의 망실,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수장고) ① 시장은 박물관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한 금고설치 등 자료를 격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리 및 복원 중에 있는 자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방호 시설이 갖추어진 별도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대여 등) 시장은 자료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자료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출판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변상책임) 시장은 자료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망실, 도난, 훼손 등이 되었을 때에는 행위자 등에게 평가위원회가 정한 평가액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관장에게 위임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박물관별 운영 규정을 정할 수 있다.



2.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 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8.9.] [부산광역시조례 제5526호, 2017.2.8., 제정]

□ 주요목적

시민들에게 안전한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진발생 시 시설물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안전성”이란 시설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지진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2. “내진성능평가”란 시설물이 관련 내진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내진성능 확인서”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진성능평가 등을 실시하여 해당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이하 “지진안전성 표시제”라 한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서 지진안전성 표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 및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진안전성 표시제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시, 구·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소관 시설물
2.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건축물 중 민간소유 건축물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진안전성

표시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진안전성 표시 시설물 현황
3. 지진안전성 표시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지진안전성 표시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진안전성 표시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확인 신청) ① 시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호의 시설물 중 시 소관 건축물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제1호의 시설물 중 시 소관 시설물(건축물 제외)에 대하여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군수 또는 공사·공단 이사장은 제4조제1호의 시설물 중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성 표시제의 확인을 받으려면 시장에게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3항 및 「건축법」 제48조에 따라 제4조제2호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민간소유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지진안전성 표시제의 확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기간) ① 허가권자는 제6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확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확인) ① 허가권자는 제6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신청한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내진성능을 확보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지진안전성 표시제 신청서류 등에 대한 종합검토를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진안전성 표시 시설물 관리번호 부여)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로 확인을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6조제4항에 따라 허가 등을 신청한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로 확인이 되면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 관리번호를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교부할 때 관리번호를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부여한 관리번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기록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표지판 부착) ①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지진안전성 표시 시설물 관리번호가 포함된 별지 제4호서식의 내진설계 시설물 표지판을 해당 시설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관리번호 및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내진설계 시설물 표지판을 해당 시설물에 부착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진설계 시설물 표지판 제작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 취소) ①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시설물이 멸실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진안전성 확인을 받은 경우
3. 불법으로 건축(증축, 개축 등), 용도변경, 대수선 등으로 구조의 변경이 발생하여 종전의 신청서류로 내진성능을 확인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취소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내진설계 시설물 표지판을 철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 현황 제출) 시장은 구청장·군수에게 해당 연도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 교부 실적 등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지진안전성 표시 시설물 현황 공개) 시장은 시설물의 지진안전성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충족하도록 하고, 시민들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진안전성 표시 시설물에 대한 현황 등을 부산광역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진안전성 표시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군, 관련 전문 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3.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11.] [부산광역시조례 제5522호, 2017.1.11., 제정]

□ 주요목적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자원을 교육활동에 제공하는 교육기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부의 양적 확산 및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해 공교육 역량을 강화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유아·초등·중등 교육 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교육기부는 나눔과 배려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이다.

② 교육기부는 주도적·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교육기부는 평등의 관점에서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 기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기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민간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교육기부 네트워크 구축
5.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지원
6.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교육기부 현황 및 학교 현장과 기관·단체의 요구사항 파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다양한 교육기부 모델 개발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제7조(교육기부자 예우)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교육청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교육기부 사항 명단 공지
3.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른 포상 및 감사장 등 수여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교육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기부정보망 운영) 교육감은 교육기부 관련 정보 제공과 교육 기부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기부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4.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 [인천광역시조례 제5763호, 2017.1.2., 제정]

□ 주요목적

인천광역시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다만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는 제외한다.
2.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학부모회“란 전체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기구를 말한다.
4. “총회“란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른 학부모 전체회의를 말한다.
5. “대의원회“란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어 이 조례 또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

제3조(학부모회의 설치) 인천광역시교육감 관할 공립학교에는 학부모회를 둘 수 있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해당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5.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부모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제6조(회원) 회원의 자격은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제7조(임원 등의 구성) ①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로 구성하되, 임원의 정수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③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④ 제3항의 감사는 연 1회 실시하되, 감사가 학부모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감사는 감사결과를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학부모회의 조직) 학부모회는 총회를 두되,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한다.

②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안 및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총회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2.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3. 학부모회 임원 선출
4.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회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③ 학부모회 회장은 총회의 의결 사항 중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학부모회 회장은 그 밖에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제13조제1항 각 호의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제16조(학년·학급·기능별 학부모회) ①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년 학부모 대표는 해당 학년별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② 학년 학부모회에서는 해당 학년의 학교생활, 학년운영 등에 대한 건의와 지원 사항 등 의견을 학부모회 회장에게 제출한다.

③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년 학부모회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학급 학부모회는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⑤ 기능별 학부모회는 해당 학부모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며 그 밖의 사항은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5. 대전광역시 알권리 충족 조례

[시행 2017.2.10.] [대전광역시조례 제4853호, 2017.2.10., 제정]

□ 주요목적

대전광역시에 추진하는 각종 공공사업 등 시책을 시민에게 알림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시키고자 함

□ 주요 내용

제2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사전 예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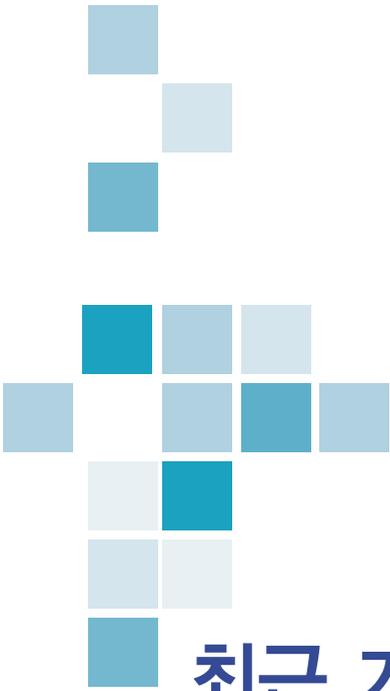
1.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50억 이상의 공사
3. 법령에 따라 민간과 대전광역시가 협력하는 사업
4. 그 밖에 널리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예고는 입법예고로 같음하고, 「행정절차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행정예고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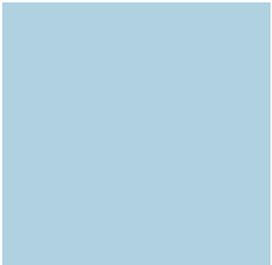
③ 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4조(예고방법) 예고는 공공사업 등 시책의 취지, 주요 내용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공청회 등) 시장은 제3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1. 수원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6.] [경기도수원시조례 제3625호, 2017.1.6., 일부개정]

□ 주요목적

수원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행정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등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원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감사관”이란 감사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4조에 따라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시민가디언”이란 시민감사관 중 고충민원을 조사 처리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제3자의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하여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 및 중재의 임무를 부여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민원사항 중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본조 개정 2017.01.06)

제3조(시민감사관의 임무) 수원시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등 각종 비리 제보
 2. 시민 생활 불편, 불만사항 제보
 3. 위법·부당한 행정사항에 대한 부패유발 제도·관행의 시정건의 및 공무원 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요구(개정 2016.2.16)
 4. 시장의 요청에 의한 기관감사 및 전문분야 감사과정 참여
 5.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등의 모범사례 발굴
- 5의2. 시장이 정한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참여 <본호 신설 2017.01.06>



6. 그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제4조(시민감사관의 위촉 등) ① 시민감사관은 사회 각 분야별로 배분하여 40명 이내로 하며, 어느 한쪽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토목·건축·환경·세무·회계·전기·통신·사회복지 등 전문 분야 시민감사관은 30명 이내로 위촉하며, 감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2.16) (개정 2017.01.06)

② 시민감사관은 수원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또는 시 관내에 주된 사업이나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시의 각종 단체원이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전문분야에서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회계사 등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또는 대학교 조교수 이상
2. 각종 비정부기구(NGO)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3. 지역사회 발전에 사명감이 있고 청렴성에 흠결이 없는 사람
4. 그밖에 감사에 관하여 풍부한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술사, 회계사 등 자격을 가진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직 감사관 중 새로 위촉된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감사관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2.16)

⑤ 시민가디언은 시민감사관 중 5명 이내로 별도 구성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7.01.06>

제5조(시민감사관의 제보사항 처리) ① 시민감사관은 수시로 시장에게 제보 또는 건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감사관이 제보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민감사관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계기관(부서)에 넘겨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2.16)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이 부진한 경우
3. 그밖의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비밀 준수 의무) ① 시민감사관은 감사에 참여하여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① 시민감사관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감사활동에 필요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성남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2.13.]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064호, 2017.2.13., 제정]

□ 주요목적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노인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고취와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기도성남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및 평가 등) ① 시장은 효를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경로효친에 관한 재교육사업

3. 효행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

4.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 등은 시장에게 효행장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7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원된 비용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효행사업 이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8조(효행 우수자 표창) 시장은 매년 10월 효의 달에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춘천시 윤희순상 조례

[시행 2017.2.20.] [강원도춘천시조례 제1264호, 2017.2.20., 일부개정]

□ 주요목적

윤희순 의병의 얼을 기리고 오늘날 여성들이 계승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윤희순상을 제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윤희순상”이라 함은 윤희순 의병의 얼을 계승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여성을 전국단위에서 선발 시상하는 상을 말한다.
2. “윤희순상심사위원회”라 함은 윤희순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수상인원) 윤희순상의 수상자는 1인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제4조(수상대상) 윤희순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여성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윤희순 의병의 정신과 삶을 이 시대에 맞도록 구현한 여성
2. 여성의 사회참여를 주도하고, 여성의 권익을 신장시킨 진취적인 여성
3. 의병활동 또는 국위선양을 한 자의 자손으로서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자를 육성한 여성

제5조(윤희순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윤희순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학계, 문화계, 여성계, 예술계, 언론계, 관련단체등 사회 각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며, 부위원장 사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등 윤희순 열과 선양의 취지 등에 관한 심사
2. 윤희순상 수상자의 결정
3.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결과보고 및 수상자 결정) 위원회는 윤희순상 심사결과 및 수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시상) ① 윤희순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시상시기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여성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07.1.31, 2017.2.20.>

제11조(실비변상) 춘천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고성군 2018 평창동계올림픽 민간추진 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2.17.] [강원도고성군조례 제2347호, 2017.2.17., 제정]

□ 주요목적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위한 민간추진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이바지함

□ 주요 내용

제2조(지원 대상)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3회 패럴림픽대회(이하 “동계올림픽“이라 한다)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자는 고성군에 소재를 둔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동계올림픽 관련 행사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사업
2. 동계올림픽 관련 민간차원의 홍보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성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활동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사업신청자의 자발적인 활동내용
3.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미치는 영향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비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5. 순창군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시행 2017.2.16.] [전라북도순창군조례 제2369호, 2017.2.16., 제정]

□ 주요목적

대기오염으로 인한 군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경유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천연가스자동차”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중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6. “저공해조치”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7.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8. “주차”란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자동차로 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9. “정차”란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10. “긴급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11. “원동기”란 법 제2조13의2호에 따른 원동기를 말한다.
12. “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말한다.
13.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차고지를 말한다.
14.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상·노외주차장을 말한다.
15.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란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말한다.

제2장 저공해 자동차 보급 촉진 등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유사용자동차 중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이며, 건설기계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 기계를 말하며, 순창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출고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2.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제4조(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권고)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 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이외에 일정 대수 이상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

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8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보급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 할 수 있도록 충전소 등 기반시설 구축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자동차 공회전 제한 등

제6조(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등) ① 군수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에서 공회전으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 (이하 “제한지역” 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별표 1]의 제한지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행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 ② 제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누구나 쉽게 그 지역이 제한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 2]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려는 운전자는 5분 이상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시간을 10분으로 한다.

제7조(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6조에 따른 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중인 자동차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가스사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유사용자동차로서 출발전 원동기 예열이 불가피한 자동차.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하 5℃ 이하인 경우로 10분 이내에 한한다.

제8조(공회전 단속요원 임명) ① 군수는 환경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병역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과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을 공회전 단속담당요원 (이하 “단속담당요원” 이라 한다)으로 임명 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단속담당요원이 단속활동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회전 단속요원증을 가지고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공회전의 단속) ① 단속담당요원은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경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③ 단속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가 제6조제3항에 따른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단속대장에 등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 법 제94조제5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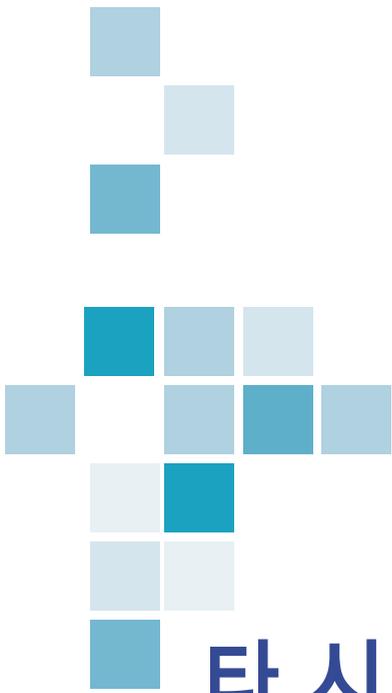
제11조(공회전 제한의 홍보 및 계도)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공회전의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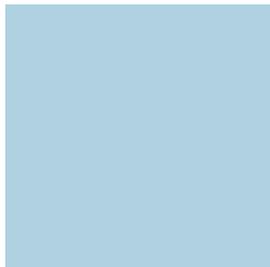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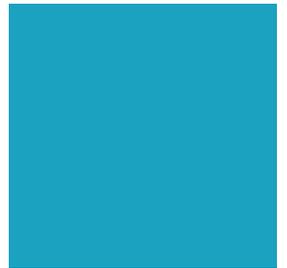
제12조(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의 소유자
2. 환경친화적자동차로 구입한 소유자
3.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순창군에서 지원하는 대상자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타 시 · 도 의회 주요 동향





대전시의회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이 주관하는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21일 오후 2시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함진호 박사(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가 “메이커교육 활성화 필요성 및 추진 방안”에 대하여,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주제발표 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심기창(대전괴정중학교 교장), 김도은(대전괴정중학교 학생), 조규석(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교사), 이항로(대전광역시교육청 과학 직업정보과장), 최경노(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학교 관계자가 참석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정기현 의원은 이번 토론회로 현재 자유학기제, 창의인재씨앗학교 등 대전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 교육을 위한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처리 간담회 개최

시의회 문석주 산업건설부위원장은 2월 3일 오후 3시 의회 다목적회의실(의사당 4층)에서 울산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회장 임길홍 등 임원 8명,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울산시회 권오섭 회장, 울산재활용품수집운반업협동조합 관계자 2명, 울산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재활용품(스티로폼, 폐비닐) 수거·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월 16일부터 ‘라면용기 같은 스티로폼과 비닐·완구류는 일체 수거하지 않는다’라는 울산재활용품수집운반업협동조합의 입장에 대해 입주자대표, 주택관리사 등 서로간의 입장에 대한 설명과 의견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문석주 부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허심탄회한 대화의 자리인 만큼, 서로간의 불신 해소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임”을 말한 뒤, “일련의 사태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존 체결된 계약조건은 충실히 이행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울산재활용품수집운반업협동조합 관계자는 “계속되는 경기불황속에서 업체 대부분이 영세한 실정으로, 폐비닐, 스티로폼 처리 또한 불가하며,



울산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 했다.

이에, 울산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환경부 지침을 보면, ‘비닐류와 스티로폼은 재활용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고 반문한 뒤, 당초 계약기간 준수와 함께 아파트 주민들도 올바른 분리 배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도 전국적으로 업체와의 분리수거 계약 단가를 보면, 부산 944원, 대구 1,118원, 경남 1,068원으로, 울산 342원은 터무니없는 단가임을 지적하고, 기존 계약의 이행 준수를 강조 “했다.

끝으로, 울산시 관계자는 “재활용업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향후 재활용업체 입찰 시 제한을 완화하여 더 많은 업체 참여 유도” 를 당부했다



일본의 파렴치한 역사왜곡 시도, 즉각 철회하라!

- 일본 눈치 보기 외교부 질타 -

19일 경기도의회 송낙영(남양주3, 더민주) 의원이 일본의 학습지도 요령 개정안 발표와 부산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에 항의하기 위해 일본 대사관 앞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휴일 피켓시위에서 송낙영 의원은 “독도를 향한 일본의 집요하고도 파렴치한 역사 왜곡 앞에 일본이란 나라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의심케 한다”고 말하고, “미래에도 영원히 한일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자 조장하는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송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외교부장관이란 사람의 일본 눈치 보기 외교”라고 말하고, “터무니없는 합의에 끌려다니지 말고, 10억엔 상환하고 쫓대를 가지고 적극 외교에 임하라”고 주문했다.

송 의원은 지난 2015년 ‘일본의 왜곡된 교과서 검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바 있으며, 현재 경기도의회가 추진하는 평화의 소녀상 독도 건립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강원도의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건의문

강원도는 지난 2011년 7월 7일, 3수 도전 끝에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온 국민의 염원과 열렬한 성원으로 유치하였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개최되는 평화올림픽인 만큼 스포츠 경기를 넘어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온 국민이 한뜻으로 모여 성공개최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정부의 올림픽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현재 평창동계올림픽은 성공적인 개최에 필요한 예산 부족분 4,000억원에 대한 재원 마련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관 없이 예산을 확보하기란 어려움이 따를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올림픽 붐조성을 위해 테스트이벤트와 각종 행사를 통한 범국민적 홍보가 절실한 골든타임에 장관의 부재는 부처를 움직이는 큰 동력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발표된 동계올림픽 유산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운영방안 수립 연구용역에 따르면 동계올림픽 10개 경기장 운영비로 매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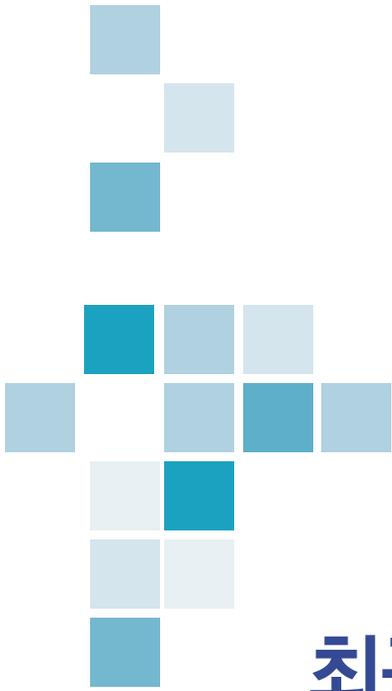
121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면서 사후 남겨진 올림픽 유산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비 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부재는 심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실질적이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장관의 부재에 따른 차관의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준비단계를 넘어 올림픽 역사에 길이 남는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기 위해 범국가적인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지원과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 적극적인 조치가 뒷받침 돼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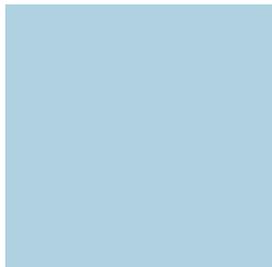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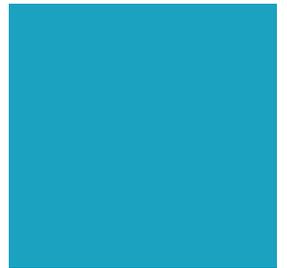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정부와 국회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팔을 걷고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더 이상의 시행착오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올림픽이 대한민국의 최우선 현안이고 침체된 대한민국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기폭제라는 점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88서울올림픽과 2002한일월드컵은 우리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이 있었기에 이루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다시 한 번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은 국민의 행사로 이끌어내어 세계인이 하나 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공백 없는 지원과 모든 역량을 쏟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제 · 개정 법령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17.2.4.] [법을 제14024호, 2016.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른 법에서 정하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해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고카페인 함유식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수판매업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원범위를 확대하며 지원을 받은 후 일정기간 영업하지 않고 휴·폐업하는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어린이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이외에 규제가 불필요한 품질인증 식품 등 모든 어린이 기호식품까지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가 지켜야할 영양성분 표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뿐 아니라 표시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표시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품질인증식품의 변경 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유효기간을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인증기간과 동일하게 변경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질 인증식품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개선함.

이와 더불어 실효성이 없는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제도를 폐지하여 품질 인증제도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요청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 확대(제2조제6호)

학교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고카페인 함유 식품 외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고카페인 함유 식품도 포함하도록 함.



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비용 지원 및 지원금 반환 확대(제7조제3항)

1)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 외에 이미 지정받은 자에게도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함.

2) 현재 시설 개·보수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바, 비용 지원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

다.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한정하여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금지함(제10조제1항).

라. 품질인증식품의 변경신고(제15조제4항 신설)

인증을 받은 자가 제품명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함.

마.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제16조).

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식품 수거·검사를 의무화함(제18조제2항).

사.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제도를 폐지함(현행 제19조 및 제20조 삭제).

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26조).

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의2 신설).

차. 품질인증 취소 청문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변경함(제28조).

카.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가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제27조 및 제29조).

2. 온천법 시행령

[시행 2017.2.13.] [대통령령 제27858호, 2017.2.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온천수 추가 확보를 위하여 기존 온천공에 부수하여 굴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굴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

2. 법 제12조제4항제3호가목에 따라 온천수 추가 확보를 위하여 기존 온천공에 부수하여 굴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서류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8.2.9.] [법률 제14569호, 2017.2.8., 제정]

□ 제정이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 등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현재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심리부검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국회사무처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징역형 대비 적정 벌금액의 일반기준인 ‘징역형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에 따라 벌금형의 금액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의 사전 예방,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자살 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제4조제2항 후단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다. 심리지원 대상을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외에 자살시도자의 가족까지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제20조).

라.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의 금액을 상향조정함(제25조).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 2017.8.9.] [법률 제14561호, 2017.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 등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현재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심리부검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하려는 것임.

또한 국회사무처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징역형 대비 적정 벌금액의 일반기준인 ‘징역형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에 따라 벌금형의 금액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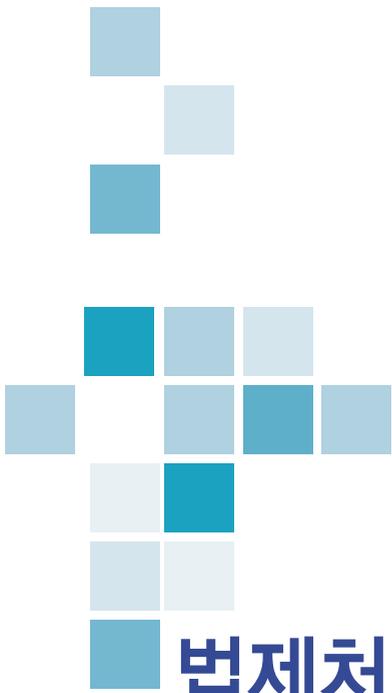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의 사전 예방,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자살 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제4조제2항 후단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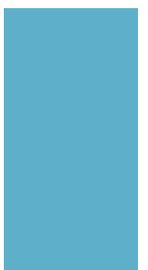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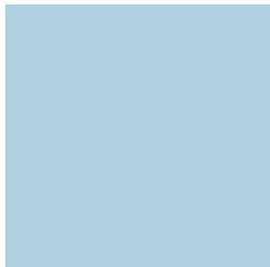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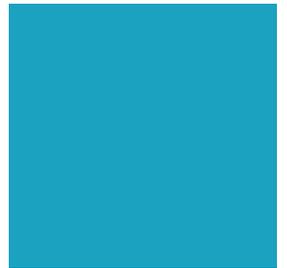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다. 심리지원 대상을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외에 자살시도자의 가족까지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제20조).

라.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의 금액을 상향조정함(제25조).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강원도 태백시 -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5호에 “그 밖에 태백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관련)

(안건번호)의견17-0016(회신일자)2017-02-08

【질의요지】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5호에 “그 밖에 태백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5호에 “그 밖에 태백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태백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서는 태백시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태백시조례안”이라 함)에 제2조제15호를 신설하여 “그 밖에 태백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보이므로, 태백시조례안 제2조제15호의 내용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교육경비보조규정”이라 함)에 위반되는 점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 각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는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제2호에서는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제2호의2에서는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제3호에서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제4호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제5호에서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제6호에서는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가 없고, 같은 조 제6호에서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태백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태백시조례안 제2조제15호로 규정하는 것은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태백시장은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 신청된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같은 조 제2호), 보조사업의 타당성 여부 판단(같은 조 제3호),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같은 조 제4호) 등 이미 신청된 사업을 대상으로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바, 태백시 조례안 제2조제15호와 같이 심의위원회가 교육경비 보조대상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기능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태백시조례안 제2조제15호에 “그 밖에 태백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심의위원회의 기능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 지방자치단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경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국가배상법」 제5조 등 관련)

(안전번호)의견17-0023(회신일자)2017-02-03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경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인 점과 「국가배상법」과 달리 별도의 배상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손해를 배상을 하도록 할 경우 「국가배상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경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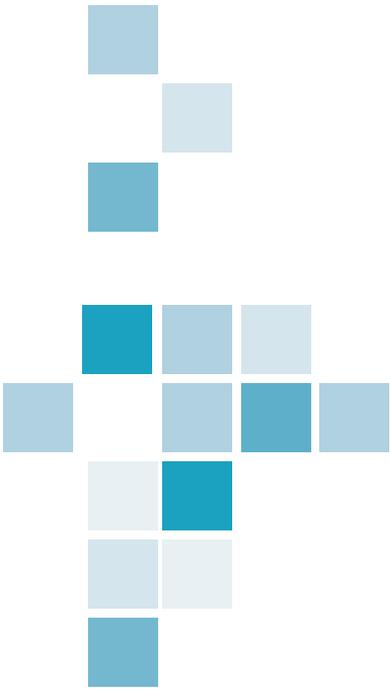
【이유】

「거제시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 조례안」(이하 “거제시조례안”이라 함)은 시의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 중 손해액이 경미한 건에 대하여 시가 자체적으로 신속히 배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제1조), 그 배상대상을 도로·하천, 그 밖의 시가 관리하는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로서 그 청구금액의 총액이 1백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로 제한하면서(제2조), 배상기준(제3조), 거제시영조물배상심의회의 구성·운영(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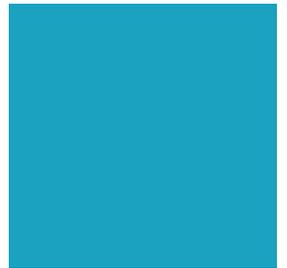
상신청(제8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거제시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경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거제시에서 자체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만을 의미하므로(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참조), 국가사무에 관하여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제10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 심의회를 두도록 하고(제1항),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심의회를 두도록 하며(제2항), 이러한 본부심의회, 특별 심의회 및 지구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 또한,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법무부장관은 각 심의회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6조에서는 지구심의회는 사회의 이목을 끄는 사건 또는 배상책임의 성립여부나 그 범위에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배상결정을 하기 전에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제1항), 지구심의회는 매월 10일까지 지난달의 배상 신청의 접수 및 결정상황을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매월 15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제2항),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무는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국가사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6. 4. 26. 회신 의견 16-0087 참조). 나아가, 「국가배상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힌 경우, 타인의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배상법」에서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에 관한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면서 조례에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거제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및 지급금액의 결정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법제처 2016. 11. 28. 회신 의견 16-0278 참조), 거제시 조례안과 같이 그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경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그 배상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배상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인 점과 「국가배상법」과 달리 별도의 배상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손해를 배상을 하도록 할 경우 「국가배상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경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





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57846

【판시사항】

- [1] 소음이 민법 제217조에서 정하는 생활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소음이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경우, 이웃 거주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2] 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의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고려할 사항
- [3] 도로변 지역의 소음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도로 소음이 있다고 하여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제기된 사건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를 받고 있는지는 거실에서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 등을 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 [1] 민법 제217조는 제1항에서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라고 정하고, 제2항에서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라고 정하고 있다. 소음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생활방해에 해당하므로, 제2항에 따라 이웃 거주자는 소음이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2]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고통을 받는 경우에 이웃 거주자에게 인용의무가 있는지는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도로소음이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 라고 한다)를 넘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종류와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로가 현대 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시설로서 지역 간 교통, 균형개발과 국가의 산업경제 활동에 큰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고, 도시개발사업도 주변의 정비된 도로망 건설을 필수적인 요소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 자동차 교통이 교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주거의 과밀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일정한 정도의 도로소음의 발생과 증가는 사회발전에 따라 피할 수 없는 변화에 속하는 점 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3] 도로소음을 규제하는 행정법규는 인근 주민을 소음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도로소음이 이 기준을 넘는지는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 라고 한다)를 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도로변 지역의 소음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 환경기준을 넘는 도로소음이 있다고 하여 바로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어 민사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제기된 사건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를 받고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음피해지점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된 실외소음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 거실에서 도로 등 해당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 등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패가 진행 중인 양파와 건고추를 수입, 보관, 판매한 사건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237

【판시사항】

-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자연식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자연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개념이 식품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식품 관련 산업의 발전, 식습관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 양파와 건고추가 그 자체로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는 “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식품에는 가공 및 조리된 식품뿐 아니라 ‘자연식품’도 포함된다. 그런데 자연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 목적(식품위생법 제1조), 식품위생법 및 그 시행령 등 식품위생법령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 식품의 생산·판매·운반 등에 대한 위생 감시 등 식품으로 규율할 필요성과 아울러 우리 사회의 식습관이나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개념은 식품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식품 관련 산업의 발전, 식습관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거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되었던 것도 현재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할 수 있다.

- [2] 구 식품위생법(1976. 12. 31. 법률 제2971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 위임에 따라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정한 보건사회부 고시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이 1981. 4. 11. 보건사회부 고시 제81-26호로 개정되면서 콩나물의 수은함량에 관한 잠정기준 등 ‘자연식품’에 관한 일반 기준이 신설된 점, 1999년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이 2007. 12. 21. 법률 제8749호로 전부 개정되어 제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되면서, 제3조 제7호 (가)목에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을 식품으로 정의하는 규정이 추가되어 그 규정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점,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의 “5.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양파·고추를 비롯한 농산물의 중금속 기준뿐만 아니라, 건고추의 곰팡이독소 기준 및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규정하는 등 식품 관련 법령과 고시에서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던 점, 우리 사회의 식습관 및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상 가공·조리되지 않은 양파와 건고추는 식품으로 받아들여져 왔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가공·조리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고 있으므로, 가공되지 않은 양파와 건고추를 식품으로 취급하여 위생을 감시할 필요성이 있는 점,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국민들의 식습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식품안전관리체계에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파와 건고추는 그 자체로 현행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해당한다.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시사항】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확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